

2023학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계획

2023. 2.



충남삼성고등학교
CHUNGNAM SAMSUNG ACADEMY



1. 학교 일반 현황

학교명	충남삼성고등학교	설립 구분	사립		
교원수	98	학생수	1079명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77				
전화	041-339-3000	학교장	공순택		
교감	김도훈	학생생활 안전부장	이설	학교폭력 책임교사	홍정훈

◎ 학교 여건

- 가. 지역사회 특성 : 삼성단지 내의 면 단위에 입지
- 나. 학생 특성 : 충남 모집 단위로, 임직원 자녀 70% 구성, 기숙사 생활
- 다. 교원 특성 : 석·박사 학위 소지, 자사고 경험 등 각 과목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충남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 선발된 교사들이 다수임
- 라. 학부모 특성 : 삼성 임직원이 많으며 학생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음

◎ 2022학년도 학교폭력 관련 특이사항

- 가. 학교폭력사안 7회, 학교생활교육위 등 회부 22건, 의심 및 미수
- 나. 퇴학처분 2회, 도교육청 재심 2회
- 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수업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사이버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함.
(특정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음)
-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학교장 종결 사건 보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가는 경우가 더 많음.
- 라.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신고 되서 온 경우 2건
- 마. 성인과 연류된 새로운 사건들이 생김



2. 2023년에 변화된 점

- ◎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SNS를 통한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함
-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19.8.20. 공포)으로, 처벌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 대처’ 하면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1) 충청남도 교육청은 어울림, 어울림톡 등으로 학교 폭력예방 및 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1.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됨
 - 3) 가해 관련학생과 피해 관련학생 **긴급조치 및 분리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강화
 - 1)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회복 및 특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3. 학교폭력 예방 교육

◎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목적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폭력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성희롱과 따돌림, SNS 폭력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 근거

-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법률 제15조).
-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 실시한다(법률 제14조 제4항). 다만,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률 제 15조 제3항).



3)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제3호).

◎ 어울림,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실시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 11차시 실시

	교과연계	프로그램	비고 란 작성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어울림 / 사이버 어울림	체육	기본	어울림 갈등해결 프로그램 운영	1	2				
	진로와 직업	심층	어울림 공감 프로그램 운영	1	2				
	통합사회	기본	사이버 어울림 의사소통 프로그램 운영	2					
	기술가정	심층	사이버 어울림 갈등해결 프로그램 운영		3				
	미술	기본, 심층	어울림 윤리의식 프로그램 운영			2	3		
	운동과 건강	기본	사이버 어울림 자기조절 프로그램 운영			2	4		
	스포츠생활	기본	어울림 팀워크 프로그램 운영					2	2
	진로와 직업	기본, 심층	사이버 어울림 윤리의식 프로그램 운영					3	2
	고전과 윤리/생활과 과학	기본	어울림 자기조절 프로그램 운영						2
계				4	7	4	7	5	6
				11		11		11	



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활용

- ① [어울림톡\(http://talkcne.or.kr\)](http://talkcne.or.kr) / 예방교육 / 학생 예방교육 / 어울림 프로그램 수업자료(지도안, PPT 등) 활용
- ②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www.stopbullying.re.kr\)](http://www.stopbullying.re.kr) / 자료실 / 어울림 프로그램 수업자료(지도안, PPT 등)

※ 2022년, 충남교육청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은 '어울림톡' 이용을 기본으로 함

◎ 실시 계획

교육명	대상	횟수	방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 학급 단위 자료 시청(1분기, 3분기) · 학년 단위 집체 교육 실시(年 1회) · 어울림,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실시 · 교과 11시수, 창의적 체험활동 1~10시수 실시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포함(GAT 시간 활용)
	보호자	年 1회 이상	·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가정폭력 및 신고 의무자 교육	교직원	年 1회 이상	· 가정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조 · 전 교직원 회의를 활용하여 동영상 시청 · 아동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 강조 · 교내 전문 상담사를 활용한 교육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학생	분기별 1회 이상	· 학급 단위(2,4분기), 집체 교육(1,3분기) 실시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
	교직원	분기별 1회 이상	· 자살 징후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할 예정(교직원 연수 활용)
	보호자	분기별 1회 이상	· 자살 징후 판별, 발생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학부모 총회 시)



도박예방 교육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 도박 사이트 유형 및 대처 방법 교육 · 기숙사내 도박 행위 근절 교육 및 교칙 준수 교육
	교직원	年 1회 이상	· 도박 사이트 유형 및 대처 방법 교육 · 도박 징후 발생 시 대응요령
장애이해 교육	학생	年 1회 이상	· 장애 학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 집체 교육 및 역할 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
	교직원		· 장애 학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근거 교육진행 · 교직원 연수 사이트 및 교육 동영상 활용 가능
장애인식 개선교육	학생	年 1회 이상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목표로 한 교육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
	교직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목표로 한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근거 교육진행 · 교직원 연수 사이트 및 교육 동영상 활용 가능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교직원	年 1회 이상	· 장애인 학대에 대한 범죄 예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신고의무자 관련 · 아동·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교직원 연수 사이트 및 교육 동영상 활용가능
선거교육	학생	年 1회 이상	·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절차와 방법 교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시청 활용 가능 · 대선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교육 등
다문화 교육	학생, 교직원	年 2시간 이상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 실시 의무 · 다문화 인식개선과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 다문화 학생 생활지도 및 차별 예방
학생인권 교육	학생	학기 당 2시간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인권 감수성 함양 ·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이해 및 교육 ·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교육 · 모두가 존엄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 · 가정통신문, 큰사넷 활용 등 보호자 교육
	교직원	年 2시간	
	보호자	年 1회	
긴급복지 신고의무 자교육	교직원	年 1회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2조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사각지대 예방 · 학생, 아동 피해 예방 및 교육



4. 학교폭력 실태조사

◎ 목적

온라인 설문을 통한 전체 학생 전수조사로 학교폭력의 실태와 징후를 파악하여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근거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11조 제8항)

◎ 실시 계획

- 1) 학기별 1회 실시
- 2) 학급별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전수 조사
- 3) 충남교육청 시행 지침에 따라 실시

◎ 실태조사 결과 활용

-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보고
- 2) 본교 여건을 고려한 예방대책 수립 추진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강화 및 전학배정 지침

◎ 목적

학교폭력 관련학생의 치유회복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관련학생의 치유회복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강제조항으로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직무상 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복종의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실시 계획

1)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①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② 학교자체 숙려제 운영,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회복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1차: 학교 Wee클래스(상담실) 운영

② 2차: 교육지원청 Wee센터 활용

3) 가해학생 전출은 충남교육청 시행 지침에 따라 실시

6. 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길라잡이(충청남도 교육청)